

인하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1.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2.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
3. 졸업준비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4.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
5. 생활도서관 관장 선거

인하대학교 총대의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학생대표를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대표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2.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3. 졸업준비학생회 회장, 부회장
4.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5. 생활도서관 관장

6. 단과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 일반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10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대의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3. 제2항 중선위는 늦어도 선거일 공고일 7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장은 소속 중선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선거종료 후 48시간까지로 한다.
5. 중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①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때
 - ②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 ③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 ④ 학칙에 의한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6. 중선위원은 총대의원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 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선위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중선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

제 5조 (중선위의 직무) 중선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 등록사무 및 자격 심사
2. 선거운동관리
3. 선거인 명부 작성
4.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5. 당선인의 결정
6.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의 심사, 처분
7.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 무효 판정 및 선포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 중선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2/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중선위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중선위는 선거사무 처리 및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의원 중에서 중선위 운영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요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7. 기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상회하는 사항의 경우, 중선위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여되며, 이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는 중선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 장 선거인 명부

제 7조 (선거권자)

1.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인하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단, 졸업준비학생회장 선거는 3학년, 총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대의원,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각 동아리별 대표자 3인, 생활도서관장 선거는 생활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 8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중선위는 선거일 공고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9조 (명부 열람) 중선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선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선위는 이의신청이 있는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이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 4 장 후보자

제 11조 (피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생자치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자로서 피선거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장 선거는 정,부 각각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총대의원회 의장 선거는 정은 4학기, 부는 4학기 이상 등록한 대의원. 단, 의장은 선거 당일 전 학기부터 대의원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졸업준비학생회장 선거는 정,부 각각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4. 동아리연합회회장 선거는 정은 4학기, 부는 4학기 이상 등록한 동아리 회원인 자.
5. 생활도서관 관장 선거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생활도서관 회원인 자.
6. 단, 유급한 학기 및 부분 등록한 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 12조 (후보자 등록)

1.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중선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재학증명서 (정,부 각각 1매)
- ② 자기 소개서 1매 (정,부 각각 1매)
- ③ 후보자 소견서 1매 (정,부 각각 1매)
- ④ 서약서 (정,부 각각 1매)
- ⑤ 입후보 지원서 1매 (정,부 각각 1매)
- ⑥ 추천서

(총학 10개과 (학부포함) 500명, 총대 20명, 줄준 10개과 (학부포함) 200명, 동연 100명, 생도관 20명 이상, 단 복수추천은 무효처리됨)

- ⑦ 사진 : 정, 부 15 * 20
- ⑧ 공약사항 및 구호
- ⑨ 공약사항 이행 계획서

2. 제1항 6호의 추천서는 중선위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중선위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한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서류를 반환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장 선거는 연합단체에 대한 지위권 사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제1항 9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3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1.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추천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4조 (등록무효, 사퇴)

1.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제13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및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된 때에는 중선위는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선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중선위는 후보자가 등록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 1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17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1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7조의 2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 당해 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정,부 학생회장 및 집행부, 과 정,부 학생회장
3. 선거 당해 학기 대의원
4. 중선위원 및 운영요원
5.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사퇴할 수 없다.

제 19조 (선거운동본부의 설치)

1. 후보자는 학내에 선거운동본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는 중선위에서 결정하여 배정하며, 각 후보자간 동등한 조건으로 부여하되,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중선위의 결정으로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선위의 결정을 통해 후보자의 선본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이동선본은 중선위에 보고하여야 하고, 중선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곳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0조 (선전벽보)

1. 중선위는 구, 성명, 사진,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벽보를 작성, 배부한다.
2. 후보자는 1항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중선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고는 수정할 수 없다.

3. 벽보에는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4. 선전벽보는 중선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각 후보가 균등사용 한다.

제 21조 (개인홍보물)

1. 후보자는 구, 사진, 성명, 소속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개인 홍보물의 종류는 대자보, 프랭카드, 인쇄물로 하며, 그 수량 및 종수는 위원장과 후보자간에 합의하여 조정하며 조정이 안될시 중선위에서 결정한다.
3. 후보자는 제1항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에 중선위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배부할 개인 홍보물의 종류별로 3매씩 중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 22조 (현수막 게시)

1. 중선위는 각 후보자당 동등하게 현수막을 게시한다.
2. 후보자는 각 후보자당 동등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3. 현수막에는 소속학과, 성명, 선전구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4. 현수막의 규격, 작성, 게시방법은 후보자와 중선위가 합의 후 결정한다.

제 23조 (합동연설회)

1. 중선위는 합동연설회의 개최일시, 장소와 후보자 1인당 연설시간을 균등하게 결정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중선위 주관으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연설순위는 연설회 개최시마다 후보자의 추천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자기순위의 연설시간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후보자가 연설순위 추천시 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타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 24조 (공청회 개최)

1. 중선위는 공청회를 1회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개최방법, 일시, 장소는 중선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 25조 (대담, 토론의 방송 등)

1. 학교방송이나 학교신문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합의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방송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보도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 26조 (허위논평 등의 금지) 교내의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을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으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제 27조 (선거진행 관련 합의문의 작성)

1.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선본과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양식(별첨양식)에 따라 합의문을 작성하고 날인하며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선거시행세칙 제 42조 9항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2. 합의문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본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없다.
3. 합의문 작성과 관련하여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공고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다.

제 6 장 선거일과 투표

제 28조 (선거일) 선거일은 3일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중선위와 후보자간에 협의로 결정한다.

제 29조 (선거일 공고) 위원장은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투표방법)

1.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한다.
2.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신원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제 31조 (투표소 설치)

1. 중선위는 투표 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단, 투표소 내에는 후보자의 모토와 소속학과 및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게재할 수 있다.

제 32조 (투표시간)

1.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위원장은 투표를 마감할 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4. 투표참관인의 부재로 인하여 투표 개시와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선위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제 33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중선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구호, 한글로 기재된 성명란을 인쇄하고 일련번호 및 중선위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34조 (투표)

1. 선거인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검

- 인된 증명서에 한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3.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할 수 없다.
 4.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5.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인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의 자물쇠를 봉함, 봉인토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 35조 (투표참관)

1. 중선위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을 선거구별 1인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시 그 명단을 중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4.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선위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6. 중선위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참관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36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1. 투표자, 중선위원, 운영요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는 들어 갈 수 없다.
2. 중선위원, 운영요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선위가 교부하는 기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개 표

제 37조 (개표)

1. 중선위는 선거일 3일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는 중선위가 행한다.
3. 개표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요원을 둔다.
4.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투표소별로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결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6. 출석한 위원 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38조 (개표참관)

1. 중선위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선정하여 그 명단을 개표 당일에 중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4.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선위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39조 (무효투표)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③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④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⑤ 기표봉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⑥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⑦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⑧ 기타 중선위가 제시한 기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2. 유, 무효표의 판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 8 장 당 선 인

제 40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인 결정은 선거권자 5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중선위로부터 처분 받은 징계회수와 징계량이 가벼운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징계정도도 같을 시에는 해당 후보자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단독입후보의 경우는 선거권자 4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때로 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도 같다.
3. 당선인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중선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선위는 선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인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41조 (선거의 정리) 중선위는 투표지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금지규정 및 징계

제 42조 (금지규정)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중선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중선위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8. 선거에 관련된 낙서를 하는 행위
9.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합의문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 및 중선위에서 금지규정으로 결정된 사항

제 43조 (징계)

1. 중선위는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린다.
2. 경고처분 3회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3. 위원장은 경고 처분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중선위의 결정 사항을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이 의 신 청

제 44조 (이의신청)

1.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개표종료후 48시간 이내에 중선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중선위는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는 각각 서면으로 그 내용을 진술하여 중선위에 제출한다. 이를 중선위는 검토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중선위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 제 1조 본 규정은 개정 전에 있었던 선거에 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 2조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선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제 3조 본 시행세칙은 2000년 2학기 이후부터 시행한다.
- 제 4조 본 시행세칙은 2003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제 5조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제 6조 본 시행세칙은 2006년 2학기 대의원총회부터 시행한다.

[인하대학교 선거시행세칙 별지 '선거운동관련 합의사항' 서식]

**** xx대 xx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관련 합의 사항 ****

1. 후보자는 합의 내용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경고)조치 한다.
2. 학우들의 편의에 危害되는 경우(합의사항일지라도) 즉각 시정 조치한다. 불응 시, 그 사항에 대한 선거운동을 즉시 禁止한다.
3.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과 선전물에는 선관위의 職印이 들어가야 한다.(직인의 재사용시 경고조치)
4. 자료집과 리플렛, 대자보 등의 인쇄물과 선전물(홍보물)에는 제출된 공약만 기재하여야 한다.
5.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6. 논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xxxx년 xx월 xx일 장소 : xxxxx)

-선전에 관련한 사항-

* 선전할 수 없는 곳 :

1.포스터(선거관리위원회)

- 1) 수량
- 2) 색상

2.인쇄물(선거운동본부)

- 1) 종류
 - ① 크기
 - ② 색상
 - ③ 수량
- 2) 종류
 - ① 크기
 - ② 색상
 - ③ 수량

3.플랑(선거관리위원회)

- 크기 및 수량

- ① 크기
- ② 수량

4.대자보 및 기타 선전물

1) 종류(EX. 출사표, 대자보)

- ① 크기
- ② 색상
- ③ 수량

2) 종류(EX. 출사표, 대자보)

- ① 크기
- ② 색상
- ③ 수량

5. 선거관리위원회 인지(전지 1매당 1개) 개수

6. 기타 선거운동 관련.

1) 선동전(선거운동본부별)

- ① 일시
- ② 장소

2) 합동연설회 OR 공청회

- ① 일시
- ② 장소

3) 기타

-선거운동본부에 관련한 사항-

(타 단위 선거운동본부 입실 요청 시
선거일 자정 이후의 뒷풀이는 금지)

- 위치 및 입·퇴실 관련 사항

- ① 장소

② 입소

③ 퇴소

- 지원물품 목록

-투표시간 및 진행에 관련한 사항-

- 시간

(참관인이 xx분 내로 오지 않을 시 임의 개시,

참관인이 늦어 지연된 시간은 투표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사항

-기타 특이사항 및 금지사항-

xx대 xx회 선거 정·부 후보자는 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겠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경고)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정 입후보자 : (인)

부 입후보자 : (인)

선거운동본부장 : (인)

선거관리위원장 : (인)